감사시행세칙

인천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(2023. 03. 29.)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본 감사시행세칙은 학생 자치기구의 엄정하고 공정한 사업진행으로 인천대 학우의 자치기구로 서 신뢰를 쌓아가고 여러 자치기구의 재정사용에 있어서의 문제 사항을 개선하여 올바른 학생 회 사업의 방향설정을 고수하기 위함이다.

제2조 (감사시행세칙의 배부)

본 세칙의 목적 수행을 위해 각 단위별 대표자에게 임기의 시작을 전후로 전달한다. 당 시기 최신의 감사시행세칙을 전달한다.

제3조 (조직)

위 제1조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.

제2장 감사위원회

제4조 (구성)

- ① 감사위원회(이하 감사위)는 중앙감사위원회(이하 중앙감사위)와 단과대학감사위원회(이하 단대감사위)로 구성한다.
- ② 중앙감사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- 1. 중앙감사위원장
 - 가. 1학기에는 당해 연도 총운영위원회(이하 총운위)의 추천을 받은 1인을 위원장으로, 중앙감사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다.
 - 나. 2학기에는 차후 연도 총운위의 추천을 받은 1인을 위원장으로, 중앙감사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다.
 - 2. 중앙감사위원
 - 가. 1학기에는 당해 연도 총운위에서 중앙 감사위원장 소속단위를 제외한 15개 단위가 각 1인을 추천한다.
 - 나. 2학기에는 차후 연도 총운위에서 중앙 감사위원장 소속단위를 제외한 15개 단위가 각 1인을 추천한다.
- ③ 단대감사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- 1. 단과대학감사위원장
 - 가. 1학기에는 당해 연도 단과대학운영위원회(이하 단운위)의 추천을 받은 1인을 위원장으로, 단과대학감사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다.
 - 나. 2학기에는 차후 연도 단운위의 추천을 받은 1인을 위원장으로, 단과대학감사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다.

- 다. 1전공 1단과대학(이하 단대)의 경우에는 전공 학생회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한다.
- 2. 단과대학감사위원
 - 가. 1학기에는 당해 연도 단운위에서 단과대학감사위원장 소속단위를 제외한 단위가 각 1인을 추천한다.
 - 나. 2학기에는 차후 연도 단운위에서 단과대학감사위원장 소속단위를 제외한 단위가 각 1인을 추천한다.
 - 다. 단, 1전공 1단대의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의 감사위원을 자율적으로 구성한다.

제5조 (의무)

- ① 감사위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- ② 감사위원은 감사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.
- ③ 각 감사위원장의 판단 하에 1항과 2항의 내용을 위반한 감사위원의 경우 제29조 내용에 의거하여 징계 처분한다.
- ④ 감사위원은 본칙을 숙지하여야 한다.
- ⑤ 중앙감사위원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감사시행세칙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의무를 갖는다.

제6조 (구성시기)

- ① 감사위는 매 학기 종강 전까지 구성한다.
- ② 중앙감사위는 총운위의 의결을 통해 구성한다.
- ③ 단대감사위는 각 단운위의 의결을 통해 구성한다.

제7조 (업무 및 권한)

- ① 단대감사위는 세칙에 의거하여 감사를 진행하되, 본 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전반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. 본 칙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중앙감사위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
- ② 중앙감사위는 세칙에 의거하여 감사를 진행하되, 세칙상 부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.
- ③ 중앙감사위는 단대감사위가 해당 단과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.

제8조 (임기)

감사위원의 임기는 감사위가 구성된 날부터 감사결과의 공개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.

제9조 (의결사항)

감사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.

- 1.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(전년도 이월금 등)
- 2.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
- 3.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
- 4.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
- 5. 재심의에 관한 사항
- 6. 결산 감사보고서 및 수시 보고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감사와 관련된 제반사항

제10조 (의결)

제9조의 모든 호는 감사위 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회계 규정

제11조 (수입예산의 구분)

본칙에서 다루는 예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- 1. 자치단체 및 단대 학생회의 예산은 학생회비, 기타 수익으로 구성된다.
- 2. 전공 학생회의 예산은 학회비, 기타 수익으로 구성된다.

제12조 (자율예산의 구분)

자율예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- 1. 홍보비 : 학생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비용으로 SMS, 홍보물, 온라인 운영비 등으로 편성한다.
- 2. 회의운영비 : 총운위, 확대운영위원회(이하 확운위), 전체학생대표자회의(이하 전학대회), 학생총회 등 정기적인 회의에 다과 등의 비용으로 편성한다.
- 3. 업무추진비: 대표자의 활동을 보장하고 학우만남, 단대 및 전공 학생회 간담회 진행 시소요되는 비용으로 편성하며 총학생회 내부 업무추진비 규정에 따른다.
- 4. 행사지원비 : 아래 제13조의 내용을 따른다.
- 5. 사업비 : 아래 제14조의 내용을 따른다.
- 6. 잡지출 : 물품별 과목해소로 지출하기 곤란한 제경비 등을 편성한다.
- 7. 개인 차량에 대한 급유비용, 주류를 포함한 간담회는 자율예산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기타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은 중앙감사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.

제13조 (행사지원비)

- ① 행사지원비는 단대, 전공 및 동아리들의 행사 축하비용이다.
- ② 축하비용의 사용은 물품구입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행사지원비 사용 후 정산은 본칙에 의거하여 진행한다.

제14조 (사업비)

- ① 사업비는 교육지원비(이하 교비)의 책정이 어려운 사항, 긴급을 요하는 사업, 교비 사용 부족분에 한정하여 편성한다.
- ② 교비 부족분은 학생회 사업의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.

제15조 (지출예산의 사용)

- ① 각 예산의 심의 및 사용은 본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의 회계규정을 따를 수 있다.
- ② 학생회비 또는 학회비 사용에 대한 내용은 월별로 결산 진행 및 회계장부, 재정보고서 작성을 하도록

한다.

- ③ 학생회비 또는 학회비 사용에 대한 결산 내용은 학기별로 온라인으로 공개한다.
- ④ 학생회비 및 학회비의 입출금 총괄통장과 회계장부를 보유한다.
 - 1. 입출금 총괄통장은 학생회비 및 학회비 운용에 관하여만 사용해야 한다.
- 2. 회계장부는 대표자의 임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작성을 시작하여 임기 종료일에 작성을 마감한다.
- ⑤ 모든 재정 사용은 학생회비 또는 학회비 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⑥ 카드 영수증 등 정규 영수증 첨부를 원칙으로 한다.
- ① 단,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,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와 현금 사용 경위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다.
- ⑧ 제13조 2항에 의거하여 부득이하게 축하비용으로 현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현금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로 지급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다.
- ⑨ 재정보고서, 회계장부, 사유서와 지급내역서는 중앙감사위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.

제16조 (회계연도 및 이월금)

- ①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.
- ② 각 자치단체, 단대 및 전공 학생회는 12월 31일 이전까지 차기연도 자치단체, 단대 및 전 공 학생회에 잔여금 이월 및 회계 관련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5조 2항을 미실시한 단위는 제29조 내용에 의거하여 징계 처분한다.

제4장 감 사

제17조 (감사대상)

본칙의 감사대상은 자치단체, 단대 및 전공 학생회이다.

제18조 (감사일정)

- ① 정기 감사는 매 학기별로 제8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의 임기기간 내에 실시하며, 1학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, 2학기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.
- ② 특별 감사는 정기 감사 이외의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이다.
 - 1. 특별 감사는 전학대회에 특별 안건으로 상정하며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.
 - 2. 특정 사안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행한다.

제19조 (감사일정)

- ① 회계 감사 : 해당 학기의 자치단체, 단대 및 전공 학생회의 재정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이다.
- ② 기타 감사 : 기타 감사는 회계 감사를 제외한 모든 감사이다.

제20조 (제출서류)

각 감사대상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- 1.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서
 - 가. 해당 통장 사본에는 잔고, 입금과 출금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나. 금융기관 등 공증 기관을 통해 발급되고 변환을 거치지 않은, pdf 혹은 이미지 파일 이어야 한다.
- 2. 단가, 수량, 품목이 포함된 거래 증빙 자료가 포함된 해당 학기 재정보고서
 - 가. 카드 사용의 경우 카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.
 - 나. 현금 사용의 경우 영수증과 사용경위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.
 - 다. 영수증 상에 단가, 수량, 품목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수증과 함께 간이영수증 혹은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.
 - 라. 2호의 내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영수증과 함께 간이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.
 - 마. 가, 나, 다, 라 목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3. 학기별 회계장부
- 4. 상금, 실물, 기프티콘이 행사 상품으로 지급된 경우 다음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상품지급 내역서
 - 가. 해당 상품의 지급 경위
 - 나. 해당 상품 수령자의 인적사항
 - 다. 해당 상품 수령자의 자필 서명

- 5. 온라인에 공개된 학생회비 또는 학회비 사용내역 캡쳐본
- 6. 임기종료일에 후임자에게 잔여금을 인계한 송금확인증 (단, 후임자가 임기종료일 이전에 선출되지 않은 경우,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되는 즉시 잔여금을 인계하도록 한다.)

제21조 (감사기준)

- ① 회계 감사
 - 1. 본칙을 준수하였는가?
 - 2. 회계보고서는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는가?
 - 3. 제19조의 제출서류를 구비하고 있는가?
 - 4. 잘못된 구매행위나 계약은 없었는가?
 - 5. 학생회비 또는 학회비를 남용·낭비하고 있지 않은가?
- ② 기타 감사는 중앙감사위에서 의결한 사안에 따라 진행한다.

제22조 (자료제출기한)

- ①감사대상은 다음 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1학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2. 2학기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감사대상은 각 감사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22조 1항의 마지막날 기준 10일 이내에 감사위에 제출한다.

제23조 (감사시행 절차)

감사위는 아래의 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.

- ① 감사위는 감사대상이 제출한 자료를 2주안에 각 단위별로 교차하여 감사한다.
- ② 감사위는 감자 자료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고 감사대상은 성실하게 답변 및 필요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감사위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1차 감사보고서를 작성 후 감사대상에게 통보한다.
- ④ 감사대상이 1차 감사보고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24조를 따른다.
- ⑤ 감사대상은 감사가 완료된 최종보고서에 확인 및 서명을 진행한다.
- ⑥ 완료된 최종보고서는 총운위에 제출하여 보고한 후, 전학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.
- ⑦ 감사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감사결과를 7일간 공고한다.

제24조 (대면감사)

① 제23조 4항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감사대상은 1차 감사보고서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다. 재감사 진행 시 추가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.

- ② 감사위는 감사대상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대면감사를 실시한다.
- ③ 감사대상은 대면감사를 통한 2차 감사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④ 감사위는 대면감사 종료 후 1주일 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.

제25조 (문서보관)

감사위는 감사결과 최종보고서 및 감사자료를 총학생회에 전달하고, 총학생회는 이를 5년의 보존기한을 두고 보관한다.

제5장 재 감 사

제26조 (재감사의 시행사유)

감사대상이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해 해당 감사위 2/3 이상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상이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시행한다.

제27조 (재감사)

- ① 재감사는 제26조의 조건 발생 후 10일 이내에 완료한다.
- ② 시기, 일정 등 제반사항은 중앙감사위가 해당 감사위와 함께 정한다.

제6장 징 계

제28조 (목적)

징계의 목적은 감사시행결과 감사대상이 올바른 재정사용을 진행하지 못했을 때 이에 대한 시정의 촉구와 반성의 계기를 주어 보다 발전적이고 책임감 있는 재정사용을 위함이다.

제29조 (징계사유)

징계의 사유는 다음 호와 같다.

- 1. 감사 자료가 미비할 경우
 - 가. 영수증 일부 분실로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: 주의 1회
 - 나. 카드 영수증 등 거래 증빙자료에 단가, 수량, 품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: 주의 1회
- 2. 감사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
 - 가. 거래 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미제출할 경우 : 중징계
 - 나. 카드 영수증 등 거래 증빙자료 및 사유서를 미제출할 경우 : 경고 1회
 - 다. 학기별 회계장부를 미제출할 경우 : 경고 1회
- 3. 감사대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에 불응 또는 불참할 경우 : 경징계 또는 중징계
- 4. 감사위원이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: 경징계
- 5. 재정의 집행이 본칙을 위배할 경우 : 주의 또는 경고

6. 그 외 감사위에서 징계의 사유로 판단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: 주의 또는 경고, 징계

제30조 (징계내용)

징계는 제29조 징계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- 1. 주의 :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.
- 2. 경고 : 경고 2회 시 징계를 발의한다.
- 3. 징계
 - 가. 중앙감사위의 의결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경징계와 중징계로 결정할 수 있다.
 - 나. 경징계는 다음과 같다.
 - 1) 감사대상의 전공에 징계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.
 - 2) 감사대상 임원의 소속과 직급, 이름을 감사보고서에 공개할 수 있다.
 - 3) 제29조 4호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은 감사위원의 경우 징계 내용과 소속, 직급, 이름을 감사보고서에 공개할 수 있다.
 - 4) 그 외 중앙감사위의 판단 하에 경징계 수위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. 다. 중징계는 다음과 같다.
 - 1) 감사대상 집행부 혹은 회장단에 대한 해임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.
 - 2) 본 칙에 위배되는 잘못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사대상에 대한 학교 당국의 처벌요구 안을 발의할 수 있다.
 - 3)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 전액 보상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.
 - 4) 그 외 중앙감사위의 판단 하에 중징계 수위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.

제31조 (징계의결)

- ① 제30조 1, 2호는 해당 감사위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의결한다.
- ② 제30조 3호는 중앙감사위 2/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총운위에서 심의 후 전학 대회에 보고한다.

제32조 (징계의 승계)

징계내역은 총학생회가 보관하여 감사 진행 이후 징계처분이 내려진 단위가 확정 된 경우 징계의 내역을 승계하여 징계의 수위를 확정한다. 승계기간은 감사 진행 2회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본칙의 개정 발의, 의결 및 효력발생)

- ① 본칙의 개정 발의, 의결은 학생회칙에 따라 전학대회 이상 기구에서 집행한다.
- ② 본칙은 개정 의결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제2조 (본칙의 적용시기)

본칙은 2010년 2학기 전학대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제3조 (본칙의 개정 발의, 의결 및 효력발생) 본칙은 다음의 날짜에 개정되었다.

- 1. 2010년 9월 15일 개정안 공표
- 2. 2012년 9월 20일 개정안 공표
- 3. 2020년 5월 25일 개정안 공표
- 4. 2020년 10월 5일 개정안 공표
- 5. 2022년 4월 1일 개정안 공표
- 6. 2023년 3월 29일 개정안 공표